

## 소득·재산 신고서

※ [ 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시를 하며,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성명 <sup>1)</sup>					
보훈급여금 등 (간호·조정수당 제외)		담당 공무원 기재			
재산소득	임대소득	원	원	원	원
	이자소득	자산 조회결과 적용			
	연금소득	금융재산 조회결과 적용			
근로소득	상시근로	원	원	원	원
	일용근로	원	원	원	원
사업소득	농업소득 (주재배작물명)	원	원	원	원
	임업소득	원	원	원	원
	어업소득	원	원	원	원
	기타(자영업)	원	원	원	원
기타소득	사적이전소득 (무료임대)	원	원	원	원
	공적이전소득 <sup>2)</sup>	자산 조회결과 적용			
	기타 (지방자치단체지원금 등)	원	원	원	원
재산사항	건축물 (주택, 건물, 시설물)	자산 조회결과 적용		토지	자산 조회결과 적용
	선 박	자산 조회결과 적용		임목재산	자산 조회결과 적용
	항공기	자산 조회결과 적용		어업권	자산 조회결과 적용
	자동차	차량명( ), 용도 [ ] 생업용 [ ] 보철용 [ ] 자가용			
	임차보증금	전·월세보증금( 백만원), 상가보증금( 백만원), 기타( 백만원)			
	금융재산	금융재산 조회결과 적용			
	동 산	소( 마리, 원), 돼지( 마리, 원)	분양권	원	
	기타가축( 마리, 원), 종묘( 원)	조합원입주권	원		
	기계·기구류( 원), 기타( 원)	회원권	자산 조회결과 적용		
부채	금융기관 대출금	금융재산 조회결과 적용		금융기관 외 기관 대출금	원
	임대보증금	원			
	공증사채	판결문, 화해, 조정조서에 의한 사채( 원)			

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4·제12조의3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·제1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·제10조의2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합니다.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**지방보훈청장**  
**보훈지청장**      귀하

1) 별지 제6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작성한 신청인 및 부양의무자 중 소득이 있는 사람의 성명을 적되, 대상자가 4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추가로 작성합니다.

2) "공적이전소득"이란 법령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·연금·급여 및 그 밖의 금품을 말합니다.